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허 궁 희 의원
3. 제정이유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안 제4조)
-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5조, 안 제6조)
-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 대상자 관리(안 제9조)

#### 5.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2. 27. ~ 2025. 3. 4.

####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      |  |
|--------------------------------------------------------------------------------------------------------------------------------------------------|----------------------|--|------|--|
| 조례안<br>예고명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  |
| 의견 제출자                                                                                                                                           | 성명<br>(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 <div></div>                                                                                                                                      |                      |  |      |  |
| <p>「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br/>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div></div> <div>년 월 일</div> <div>제출자 (서명 또는 인)</div> <div>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div> |                      |  |      |  |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완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완도  
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  
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  
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                                                                                      |         |     |                                                          |          |  |
|----------------------------------------------------------------------------------------------------------------------------------------------------|--------------------------------------------------------------------------------------|---------|-----|----------------------------------------------------------|----------|--|
| 지 급<br>대상자                                                                                                                                         | 성 명                                                                                  |         | 성 별 | <input type="checkbox"/> 남<br><input type="checkbox"/> 여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 : ) |     |                                                          |          |  |
|                                                                                                                                                    | 전입일                                                                                  | 년 월 일   |     | ※담당 공무원<br>확인 후 기재<br>(거주기간 : )                          |          |  |
| 지급<br>계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br>번호 |  |
| <p>「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br/>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p> <p>완도군수 귀하</p>         |                                                                                      |         |     |                                                          |          |  |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기초연금 지급 계좌 동일 시 제외), 위임장(대리신청 시)                                             |         |     |                                                          |          |  |
| 신청 시<br>유의사항                                                                                                                                       | <p>※ 지급제외 · 전액 환수</p> <p>－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br/>말소, 완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p>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
| <p>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br/>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br/>것에 동의합니다.</p> <p>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p>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      |  |              |  |
| 위 임<br>받은 사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대상자와의<br>관 계 |  |
|                | 위임사유 |  |              |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완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별지 제3호 서식】

[illegible]